

공리주의

1. 공리주의란?

- 도덕, 선 = 더 많은 쾌락,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항상 최우선 고려사항!!)
따라서 쾌락을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다고 봄. = 쾌락 계산의 기준 존재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함 = 결과주의
같은 행위더라도 다른 도덕 판단이 가능함→상대론적 윤리
행위의 옳고 바름을 결정하는 보편적 도덕 원칙 존재함.
이러한 원리는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만 중시하며, 사상가는 제러미 벤담.
질적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과 '질' 모두 중시하며, 대표 사상가는 존 스튜어트 밀.
규칙 공리주의는, 따랐을 때 더 큰 공리가 발생하는 규칙을 옳은 것으로 규정 = 규칙 결과의 유용성
이외의 생윤에서 배우는 공리주의 사상가로는 체사레 베카리아, 피터 싱어가 있음.
사상가들을 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
양적 공리주의	제러미 벤담	체사레 베카리아 피터 싱어

그러나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로, 엄밀히 말하면 양적 공리주의와는 다름.

2.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라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언급되는 목차도 다름. 아래는 그를 정리한 것.

1. 개괄	3. 사회			4. 과학		5. 문화	6. 평화와 공존		
서양 윤리	형벌	분배	불복종	정보사회	자연	음식	소통	통일	원조
벤담	벤담								
밀	베카리아	공리	싱어	밀	싱어	싱어	밀	공리	싱어
규칙									

벤담-밀은 여기서 같이 다루고, 베카리아와 싱어는 개별적으로 정리할 것임.

순서는 공리주의-규칙-밀-벤담-베카리아-싱어

3. 각 단원 별 기본 아이디어

3단원		6단원
형벌	분배	통일
1. 형벌은 공리 증진의 수단. 2. 목적은 범죄 예방(예방주의) 3. 비례의 원칙	= 불평등 분배 가능	경제효과↑, 지하 자원 비용<이익=찬성 비용>이익=반대

기출 선지 - 1단원

규칙 공리주의

[2017학년도 9평]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㉔ 공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규칙에 따라 행위하세요.

[2018학년도 수능]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㉑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 알 수 있다.

㉒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에 적용된다.

질적 공리주의(밀)

[2019학년도 수능]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2021학년도 9평]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규칙 공리주의).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 밀은 6단원 소통 윤리와 3단원 사회 윤리에서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 있기 때문에 EBS 수록 제시문 첨부함.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밀 - 1단원

우리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토론과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잘못된 의견과 이에 근거한 행위는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토론에서 행해진 논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밀, 『자유론』-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 - 3단원, 국가와 시민의 윤리

인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자유에 정당하게 간섭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기방어이다. 권력이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가하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든지, 그것이 자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정당하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물리적 강제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해악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되어야만 한다.

-밀, 『자유론』-

기출 선지 - 3단원(분배)

[2015학년도 6평]

(재화 분배 시)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ㄱ.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공리주의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소수가 희생되는 것도 용인함.

[2018학년도 9평]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제러미 벤담

1. 1단원 - 양적 공리주의

a. 결과주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대의 쾌락을 일으키면 그 행위는 선한 것(행위 공리주의)

반대로 고통을 가져오면 악한 행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선악 판단 기준이 쾌락/고통 발생 여부.

b. 모든 쾌락은 수치화/계량화할 수 있음.

2. 3단원 - 사형

a. 공리의 원리

공리에 따라 사형 여부 결정됨. = 필요악

범죄의 이익보다 사형의 이익이 더 클 때(사회의 행복을 증진할 때)만 사형 허락됨 = 비례의 원리.

그러나 형벌이 범죄 이익과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 아님!

b. 예방주의

범죄 이익 < 범죄 손해일 때의 처벌 = 범죄 예방 = 공리 증진

심화 제시문

1단원

1.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며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3단원

1. 처벌이 불필요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2. 처벌에 실효성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3.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4. 형벌은 확실성과 근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할 때에는 그만큼 크기의 면에서 그 이상으로 가중되어야 한다.

- 근접성 = 범죄와 형벌이 서로 근접해야 함을 의미 = 형벌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함.

왜 근접성이 부족하면 범죄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가?

범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공리가 저해되므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신속한 처벌 필요함.

따라서 저해된 공리를 복구할 만한이익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형벌의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5. 최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덜 해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사람을 죽일 바에, 그냥 돈을 훔치는 게 공리를 그나마 덜 저해한다는 뜻.

기출 선지

1단원

[2018학년도 수능]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 = 쾌락 계산의 기준.
- 쾌락의 종류를 구분짓지 않음.

[2020학년도 6평]

인류는 고통과 쾌락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도하며 의무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 뿐이다.

- ①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거해야 한다.
- ②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가 인간 고유의 성향이다.

[2020학년도 수능]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 사회는 개인의 합,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 (사회 명목론!!)

[2021학년도 수능]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하다.

[2022학년도 9평]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하였을 때,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④ 정신적 쾌락도 감각적 쾌락과 동일하게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
- 벤담은 모든 쾌락이 계산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22학년도 수능]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 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이다.

[2023학년도 9평]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느냐 혹은 감소하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원리이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오직 양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

[2024학년도 수능]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양적 공리주의)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쾌락의 가치를 증진할 때는 강도와 지속성 등 여섯 가지 기준 외에 쾌락과 고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를 참작해야 한다.

[2025학년도 9평]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그 양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3단원 - 사형

[2015학년도 수능]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ㄴ.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이다.

-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가 일으킨 손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함.

ㄹ.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사형으로 얻는 공리보다 사형을 하지 않아서 얻는 공리가 더 큰 경우에, 공리의 원리에 따라 사형은 부정당하다.

[2016학년도 6평]★★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 뿐이다.

- 형벌은 악이지만,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보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더 많은 공리를 일으킬 때 또는 형벌보다 더 큰 악을 제거할 수 있을 때에는 정당화된다. 즉, 형벌은 필요악이다.

ㄹ.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2016학년도 수능]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2017학년도 9평]★★

형벌의 주목적은 범죄자와 그 밖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예방주의)

공리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

★ㄴ.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한다.

- 이는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인 베카리아와 공유하는 내용이다.

[2017학년도 수능]★★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2018학년도 6평]★★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에만 적합한 형벌이다.

[2019학년도 9평]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의 가치는 어떤 경우든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ㄹ.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한다.

- 예방주의적 성격, 공리 증진을 위함.

[2020학년도 6평]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

[2021학년도 6평]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2023학년도 6평]

처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므로 악이다. 하지만 처벌이 더 큰 악을 제거한다면 양적 공리의 원칙에 의해 허용된다.

- ① 형벌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범죄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시민까지 포함된다.
- ② 형벌의 종류와 크기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 ③ 형벌은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있다.
- ⑤ 형벌로부터 초래되는 해악 또한 형벌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2023학년도 9평]

형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위법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형벌이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 ⑤ 범죄자에게 가능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